

편입 용지 조서

일련 번호	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관리 관계	
1	당초	진위면 고현리	18-4	답	73	국	국토해양부				
	변경	진위면 고현리	18-7	답	66	국	국토해양부				고현리18-4에서 분할
2	당초	진위면 청호리	산1-5	임	1,187	국	국토해양부				
	변경	진위면 청호리	산1-13	임	50	국	국토해양부				청호리 산1-5에서 분할
	변경	진위면 청호리	산1-14	임	954	국	국토해양부				청호리 산1-5에서 분할
3	당초	진위면 청호리	산1-10	임	3,282	공	경기도				
	변경	진위면 청호리	산1-15	임	594	공	경기도				청호리 산1-10에서 분할
4	당초	진위면 동천리	산129-6	임	2,314	국	국토해양부				
	변경	진위면 동천리	산129-14	임	2,102	국	국토해양부				동천리 산129-6에서 분할
5	당초	진위면 동천리	산129-10	임	5,118	공	경기도				
	변경	진위면 동천리	산129-15	임	3,673	공	경기도				동천리 산129-10에서분할

경기도 고시 제2017-5082호

파주 월릉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

경기도 고시 제2012-334(2012.10.25.)호로 승인 고시한 파주 월릉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17. 3. 28.
경 기 도 지 사

1. 산업단지 개요

가. 관리기관 : 파주시장

나. 조성목적

-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 신·증설 규제완화로 첨단업종이 입주하게 될 첨단산업단지 조성
- 파주LCD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집적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남북교류 협력기반 구축

다. 추진경위(변경)

- '06. 08. 16 : 공업지역물량 공급승인(건교부)
- '06. 11. 24 : 지방산업단지심의회 심의완료
- '06. 12. 20 :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06-451호)
- '07. 06. 25 :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(경기도 고시 제2007-176호)
- '07. 10. 29 :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07-366호)
- '07. 11. 05 :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(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-5153호)
- '09. 06. 26 :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09-249호)
- '09. 07. 22 :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(경기도 고시 제2009-297호)
- '09. 07. 23 :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09-296호)
- '10. 08. 09 :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10-5162호)
- '10. 12. 16 :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10-5229호)
- '11. 03. 23 :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11-5031호)
- '11. 03. 23 :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공고(경기도 공고 제2011-5121호)
- '11. 04. 25 :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지형도면 고시(경기도 고시 제2011-5050호)
- '12. 08. 09 :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(경기도 고시 제2012-242호)
- '12. 10. 25 :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(경기도 고시 제2012-334호)

경 기 도 보

제5691호

2017. 3. 28.(화)

- '15. 07. 17 :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(경기도고시 제2015-5121호)
- '16. 01. 15 :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16-5007호)
- '16. 09. 22 :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16-5206호)
- '17. 01. 19 :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17-5015호)
- '17. 01. 19 :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공고(경기도 공고 제2017-5056호)
- '17. 01. 26 :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17-5021호)

라. 분양현황(변경)

○ 기정

구 분	분양대상 (㎡)	분양(임대) 현황(㎡)			조성기간	조 성 기 관
		계	기본양	미 분 양		
계	615,826.6	615,826.6	611,839.5	3,987.1	2006년 ~ 2011년	파주시 · 경 기 도 시 공 사
산업시설구역	570,450.4	570,450.4	570,450.4	-		
지원시설구역	36,951.3	36,951.3	32,964.2	3,987.1		
공공시설구역	8,424.9	8,424.9	8,424.9	-		

○ 변경

구 분	분양대상 (㎡)	분양(임대) 현황(㎡)			조성기간	조 성 기 관
		계	기본양	미 분 양		
계	615,826.6	615,826.6	603,247.5	12,579.1	2006년 ~ 2017년	파주시 · 경 기 도 시 공 사
산업시설구역	573,650.2	573,650.2	570,450.4	3,199.8		
지원시설구역	33,751.5	33,751.5	29,428.4	4,323.1		
공공시설구역	8,424.9	8,424.9	3,368.7	5,056.2		

마. 입주현황(변경)

구 분	입주업체수			면 적(㎡)		
	계	제조업	기 타	계	제조업	기 타
계	3	3	-	573,650.2	573,650.2	-
2017. 2월 현재	2	2	-	570,450.4	570,450.4	-
향 후 계 획	1	1	-	3,199.8	3,199.8	-

※ 1)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2) 기타항목은 산업시설(제조업) 입주업체가 아닌 공공시설 운영업체로 제외함

바. 입지여건(기반시설)

○ 기정

시 설 명	총 계 획	조성기간	시행기관
도 로	◦ 대로 : L=880m, B=25 ◦ 중로 : L=2,058m, B=12~20m ◦ 소로 : L=749m, B=6~10m	'06~'11	파주시 경기도시공사
용 수	◦ 공업용수 : 20,200㎡/일 ◦ 생활용수 : 2,756.5㎡/일	"	"
전 력	◦ 수요량 : 461,816 MWh/년	"	한국전력공사
통 신	◦ 수요량 : 1,558회선	"	(주) KT
에 너 지	◦ LNG수요량 : 42,011 TOE/년	"	서울도시가스(주)
오·폐수처리	◦ Q = 16,336.3㎡/일	"	파주시
폐기물처리	◦ 매립, 소각 및 위탁처리	"	"

○ 변경

시 설 명	총 계 획	조성기간	시행기관
도 로	◦ 대로 : L=880m, B=25 ◦ 중로 : L=2,076m, B=12~20m ◦ 소로 : L=749m, B=6~10m	'06~'17	파주시 경기도시공사
용 수	◦ 공업용수 : 20,246㎡/일 ◦ 생활용수 : 2,711.5㎡/일	"	"
전 력	◦ 수요량 : 460,868 MWh/년	"	한국전력공사
통 신	◦ 수요량 : 1,472회선	"	(주) KT
에 너 지	◦ LNG수요량 : 42,166 TOE/년	"	서울도시가스(주)
오 폐수처리	◦ Q = 16,334.9㎡/일	"	파주시
폐기물처리	◦ 매립, 소각 및 위탁처리	"	

주) 실시계획인가시 반영된 용량을 기준으로 작성함.

2.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

가. 관리기본방향

- 첨단고도기술을 수반한 국내기업 유치를 통한 첨단산업 국가경쟁력 확보
-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도로, 용수 등 각종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지원
- 기업민원의 해소를 위한 지원기관 및 생활편의시설 유치를 통한 효율적인 입주업체 지원 및 근로자 복리후생 도모
- 생산공간, 생산지원공간, 공공시설공간, 녹지공간으로 구획별 관리하여 환경 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·운영

나.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

(1) 용도별구역 면적(변경)

○ 기정

구 분	계	산업시설구역	지원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	녹지구역
총면적	836,545	570,450.4	36,951.3	119,863.3	109,280
비율(%)	100%	68.2%	4.4%	14.3%	13.1%

○ 변경

구 분	계	산업시설구역	지원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	녹지구역
총면적	836,545	573,650.2	33,751.5	120,146.2	108,997.1
비율(%)	100%	68.6%	4.0%	14.3%	13.1%

(2)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(변경없음)

가) 산업시설구역

-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“산집법”이라한다)」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법 및 건축물 등의 설비기준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규정사항을 반영한 건축물

나) 지원시설구역

-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
- 지원시설구역 계획도 : [별표 1]
- 지원시설구역 안에서 건축행위는 [별표 2]에서만 가능함

경 기 도 보

제5691호

2017. 3. 28.(화)

다) 공공시설구역 :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

○ 주차장용지의 건축행위는 [별표 2]에서만 가능함

라) 녹지구역 :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

(3) 용도별구획 평면도 : [별표 3]

다. 업종별 배치계획

(1) 배치기준(변경없음)

가) 유치업종 및 시설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업종별 유치규모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검토, 효율적인 업종배치계획 수립

나) 시설투자의 경제성을 제고하여 업종별 집단화를 유도

(2) 세부 배치계획(변경)

○ 기정

구분	유치업종	업체수	면적(㎡)	구성비(%)
계	소 계	2	570,450.4	100.0
산업시설구역	26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1	180,712.9	31.7
	23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7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1	208,126.5	36.5
	23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7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	181,611.0	31.8

○ 변경

구분	유치업종	업체수	면적(㎡)	구성비(%)
계	소 계	3	573,650.2	100.0
산업시설구역	26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2	183,912.7	32.1
	23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7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1	208,126.5	36.3
	23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7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	181,611.0	31.6

(3) 업종별배치 계획도 : [별표 4]

라. 입주관리계획

(1) 입주대상업종(변경없음)

○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으로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23), 전자부품, 컴퓨터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6)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27)

※ ()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

○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과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에서 허용되는 건축 가능한 업종

(2) 입주자격(변경없음)

가) 산업시설구역

○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기존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장

나) 지원시설구역

○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자로서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

○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자

(3) 입주우선순위(변경)

○ 입주업체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LCD클러스터에 부합되는 자

- (4) 입주절차(변경없음)
 -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
- 마. 사후관리계획(변경없음)
 - (1) 분양용지 관리
 - 산집법,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사후 관리
 - (2) 환경관리
 -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 및 지자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, 대기, 소음,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
 -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·폐수,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적정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,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오염물질 부하량을 기준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
 - (3) 안전관리
 - 관리기관은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파출소, 소방파출소 등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등 협조체제 구축
 - 산집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하고 재해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 실시
 - (4) 기반시설지원
 -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, 전력, 용수 등 기반시설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
- 바. 지원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(1) 기본방향(변경없음)
 - 입주기업체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행정, 우정, 소방, 통신, 금융·보험, 복리후생, 교육연구시설 등과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
 - ※ 입주기업체를 위한 신속한 지원시설의 설치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시설을 분양받아 실제로 해당사업을 수행할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
 -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
 - (2) 지원(공공)시설 설치계획(변경)
 - 가)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시설
 - 지원시설용지(이주자택지용 제외) : 23,122.9㎡
 - 지원시설 설치계획 : 산집법에서 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금융·의료·교육·근린생활 시설 등 입주 가능한 시설
 - 나) 용수공급 계획
 - 공업용수공급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「한강 하류권 급수체계 사업」을 우선 공급원으로 확보할 예정
 - 생활용수공급은 문산정수장(Q=96,000㎥/일)에서 수요량을 확보하여 공급받도록 계획
 - 용수량 : 22,957.5㎥/일(공업용수 : 20,246㎥, 생활용수 : 2,711.5㎥/일)
 - 다) 오·폐수처리 계획
 - 발생 오·폐수는 가능한 자연유하식으로 계획하여 단지내 폐수종말 처리시설로 유입 전량 처리 후 방류
 - 처리에 관한 공정은 물리·화학적 처리 및 생물학적 고도처리로 기준에 맞게 처리한 후 방류
 - 라) 폐기물처리 계획
 - 발생하는 폐기물 중 주거 및 지원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과주시의 폐기물 처리계획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고,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은 입주업체별 적정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여 별도 위탁처리

[별표 1 : 지원시설구역 계획도]



[별표 2 : 건축허용용도]

1. 지원시설용지

도 면 번호	구 분	내 용
지원1 지원2 지원3 지원4	허용용도	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(1) 단독주택(1필지당 세대수는 1세대 이하) (2) 제1·2종근린생활시설(단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제외하며,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은 실내골프연습장에 한한다.) (3)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(4)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 (5) 의료시설 중 병원(정신병원 및 요양소 제외) (6)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교육원(연수원 등 포함), 학원(자동차학원, 무도학원제외) 및 아동관련시설 (7) 운동시설(골프연습장 제외) (8) 업무시설 (9)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
	불허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밀 도	건폐율 80%, 용적률 400%이하
	높 이	7층 이하

2. 단독주택용지

도 면 번호	구 분	내 용
지원6	허용용도	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(1) 단독주택 (1필지당 세대수 제한없음) (2) 제1·2종근린생활시설(단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노래연습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외하며,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은 실내골프연습장에 한한다.) (3)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※ 근린생활시설 및 아동관련시설은 지하층, 1층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며,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 40%범위내에서 허용한다.
	불허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밀 도	건폐율 60%, 용적률 200%이하
	높 이	4층 이하

3. 주차장용지

도 면 번호	구 분	내 용
주차장1 주차장2	허용용도	◦ 전체 연면적의 70% 이상 : 주차장 ◦ 전체 연면적의 30% 이하 :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·2종근린생활시설(단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외하며,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은 실내골프연습장에 한한다),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 및 영업시설, 운동시설(골프연습장 제외), 업무시설
	불허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밀 도	건폐율 80%, 용적률 400%이하
	높 이	7층 이하

[별표 3 : 용도별구획 평면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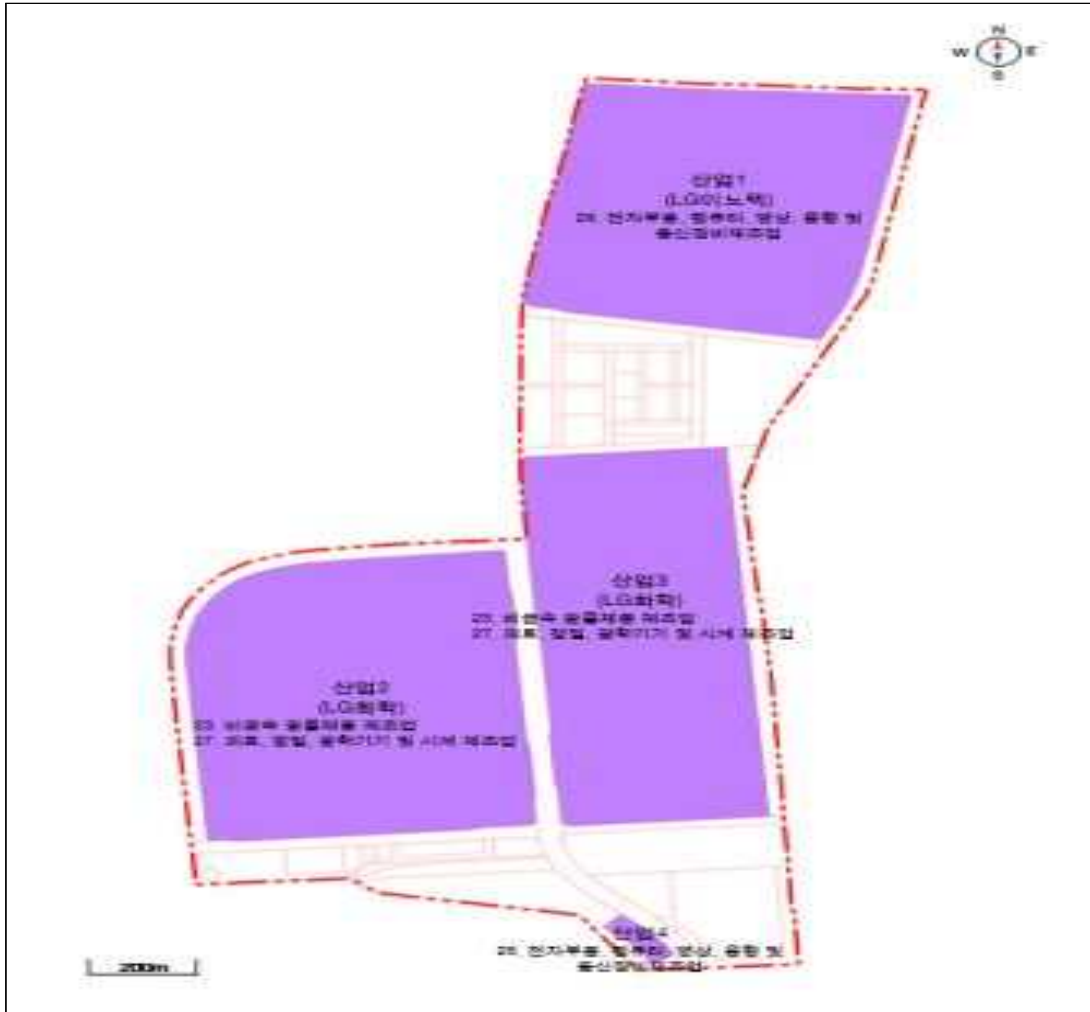
○ 토지이용계획도(당초)



○ 토지이용계획도(변경)



[별표 4 : 업종별배치 계획도]



경기도 고시 제2017-5083호

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

『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 고시된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 고시합니다.

2017. 3. 28.
경 기 도 지 사

1. 처분내용 :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
2. 처분대상 업체

법인명	등록번호	등록연월일	대표자	소재지	산림사업의 종류	등록취소 내역	
						사유	일자
성림조경건설 (주)	경기 2015-34	2015.04.28.	유환천	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59, 2층(신대동)	도시림등 조성	등록증 자진반납	2017.03.23.